

제248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요 농정 추진 현황

2004. 7. 8

농 립 부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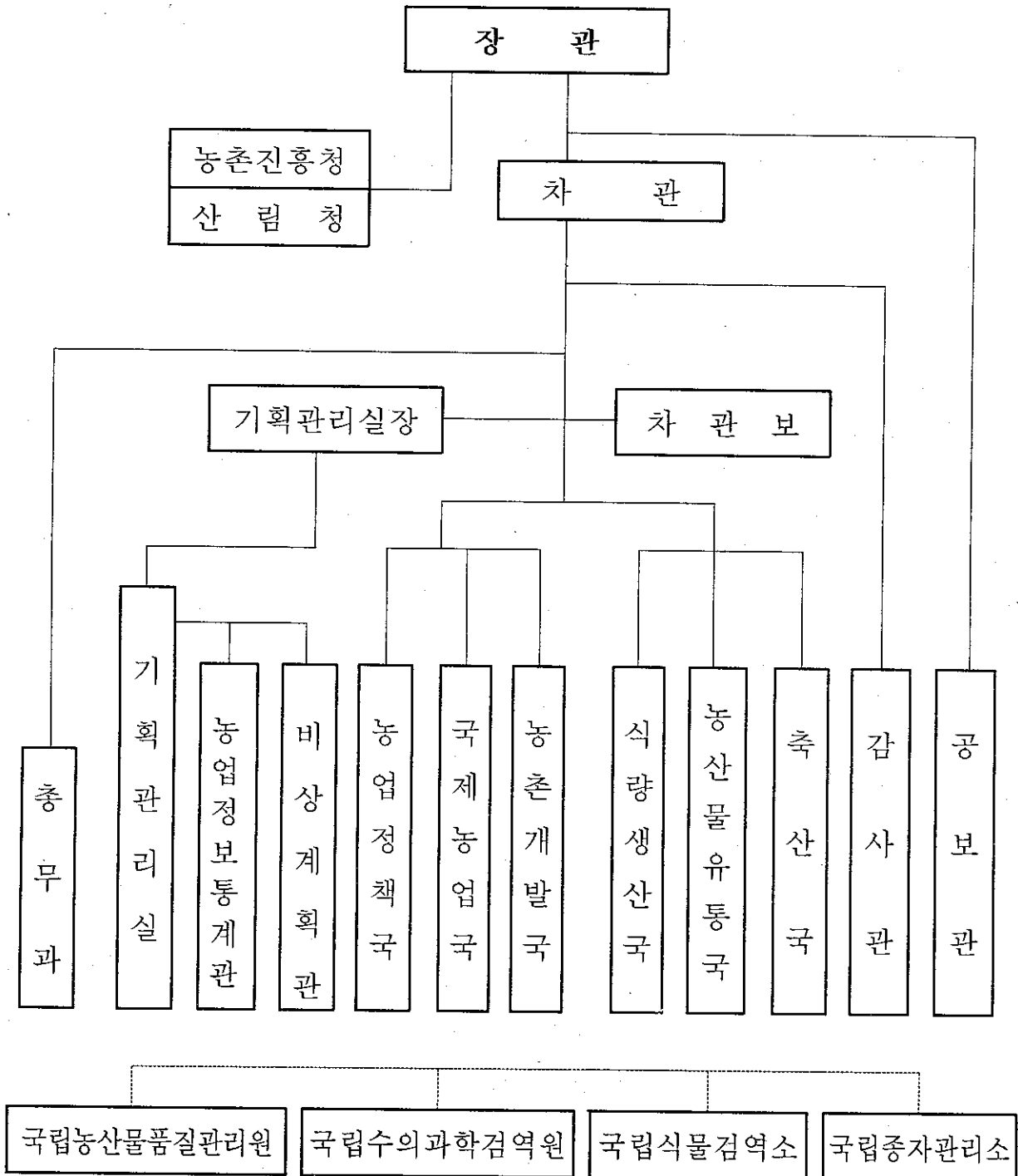
목 차

I. 일반현황	1
1. 조직	1
2. 2004년 예산 및 기금	4
3. 농림부 소관 법률	7
II. 농업·농촌 종합대책	8
1. 대내외 농정여건	8
2.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10
III. 주요 농정과제 추진상황	14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4
2.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19
3.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25
IV. 당면 농정현안	30
1. 영농 추진상황	30
2.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	31
3. 쌀 산업 국내 보완대책 추진	34
4. DDA·FTA 협상 대응	37
5. 농업협동조합 개혁	39
6. 농지제도 개선	42
7. 한·칠레 FTA 후속 대책	44
8. 가축방역 종합대책	45
V. '04 정부입법 추진계획	51

I. 일 반 현 황

1. 조 직

□ 1차관보, 1실, 6국 4관 25과 8담당관



□ 농림부 주요기능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업 무
기 획 관 리 실	농정시책 조정 및 예산편성, 국회업무, 업무혁신, 조직 및 인사, 법무행정, 투자심사 평가, 여성농업인정책
공 보 관	농림정책 및 주요현안 홍보, 대언론 관련업무
감 사 관	농림부 및 소속기관, 농업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
농업정보통계관	농업통계, 농산물 생산관측, 농업·농촌정보화 지원
비 상 계 획 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농 업 정 책 국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금융, 협동조합 지도·감독
국 제 농 업 국	WTO 농업협상 및 통상협력, 농산물 수입정책 총괄
식 량 생 산 국	식량정책 수립 및 수급관리, 식량생산, 농자재, 친환경 농업 및 기술개발
농 산 물 유통 국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농산물수출, 식품산업육성, 채소·과수·화훼작물의 수급 관리
축 산 국	축산정책수립, 축산물위생·안전성, 축산물 및 사료수급, 가축방역
농 촌 개 발 국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농외소득 증대, 생산기반 정비·관리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업 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검사, 농업통계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및 동물의 검사·검역 등 위생관리, 가축방역 및 질병 예방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입 식물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 정 원

(2004. 7월 현재)

	계	정무직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본 부	명 507	2	429	1	9	1	10	26	45	152	185		8	-	6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44		1,627		1		2	12	3	125	1,484		266	2	249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518		319			3		15	2	30	269	1	11	101	86
국립식물 검역소	411		354				1	8	2	23	320	1		10	46
국립종자 관리소	165		68			1	1	10	1	10	45		4	27	66
소 계	3,238	-	2,368	-	1	4	4	45	8	188	2,118	2	281	140	447
농 진 청	2,070	1	258	-	4	1	3	19	7	49	175	2	18	1,258	533
산 림 청	1,483	1	860	-	4	5	5	21	14	98	713	1	18	226	377

2. 2004년 예산 및 기금

가. 예산 현황

□ '04년도 국가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기준)는 118.36조원으로 '03 추경예산 118.13조원 대비 0.2% 증가(증액규모 0.23조원)

□ 농진청·산림청을 포함한 '04 농림부문 예산은 10조 6,752억원으로 '03 추경예산(9조 9,783억원) 대비 7.0% 증가

□ 농림부소관 '04 예산규모는 9조 4,364억원으로 '03 추경예산(8조 8,186억원) 대비 7.0% 증가(FTA대책 예비비 5,539억원 포함)

○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생산기반 조성 등 예산을 감액

* FTA 대책 예비비 : 5,842억원(농림부 5,539, 해양수산부 303)

<'04 농림부문 예산 규모>

(억원)

구 분	'03 예산 (A)	'04 예산 (B)	증△감 (B-A)	%
농림부문예산	99,783	106,752	6,969	7.0
○ 농 림 부 소 관	88,186	94,364	6,178	7.0
○ 농 진 청 소 관	3,924	4,217	293	7.5
○ 산 림 청 소 관	7,673	8,171	498	6.5

나. 주요 기능별 내역

(억원)

구 분	'03 예산 (A)	'04 예산 (B)	증△감 (B-A)	%
농림부 소관 합계	88,186	94,364	6,178	7.0
I. 소득지원 및 부담경감	17,106	24,071	6,965	40.7
○ 직접직불지원	6,429	6,857	428	6.7
○ 부담경감 및 경영안정	10,677	17,214	6,537	61.2
II.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174	2,534	1,360	115.8
○ 농업인교육·의료·복지	239	1,085	846	354.0
○ 농촌지역개발	935	1,449	514	55.0
III. 농업체질 개선	8,577	10,833	2,256	26.3
○ 농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5,348	7,028	1,680	31.4
○ 기술개발 및 정보화	671	733	62	9.2
○ 농업전문인력육성 등	2,558	3,072	514	20.1
IV. 생산기반조성·기계화	19,672	15,714	△3,958	△20.1
V. 양곡수매지원	10,077	8,164	△1,913	△19.0
VI. 채무상환 예산	29,912	31,249	1,337	4.5
○ 농특회계 채무상환등	21,991	22,594	603	2.7
○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5,025	6,677	1,652	32.9
○ 비료·농약계정적자보전	2,896	1,978	△918	△31.7
VII. 기본적 경비	1,668	1,799	131	7.9
* 직불성 예산	6,683	7,967	1,284	19.2

* 직불성 예산 : 직불제 명칭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포괄

다. 기금현황

□ 농림부소관 6개 기금의 '04년도 총 운용규모는 7조 40억원으로, '03년 7조 3,097억원 대비 4.2%(3,057억원) 감소

○ '03년 대비 채무상환액 5,498억원(16.2%) 감소, 순수사업비 259억원(0.7%) 증가, 여유자금은 2,179억원(10.9%) 증가

< 기금운용계획 규모 >

(억원)

구 분		'03 계획 (A)	'04 계획 (B)	증△감 (B-A)	%
소관 별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3,100	22,117	△983	△4.3
	○ 농 지 관 리 기 금	16,242	14,275	△1,967	△12.1
	○ 쌀 소 득 보 전 기 금	752	1,226	474	63.0
	○ 양곡증권정리기금	24,296	20,238	△4,058	△16.7
	○ 축 산 발 전 기 금	8,707	10,577	1,870	21.5
	○ FTA 이행 지원 기금	-	1,607	1,607	순증
합 계(①+②)		73,097	70,040	△3,057	△4.2
분 야 별	① 사 업 비	36,434	36,693	259	0.7
	○ 수 급 및 가 격 안 정	15,292	12,894	△2,398	△15.7
	○ 유 통 구 조 개 선	10,980	12,211	1,231	11.2
	○ 경 쟁 력 제 고	6,198	6,622	424	6.8
	○ 농 업 기 반 조 성	3,720	3,638	△82	△2.2
	○ 경 영 안 정 지 원	244	1,328	1,084	444.3
	② 채무상환·여유자금 등	36,663	33,347	△3,316	△9.0
	○ 사 업 관 리 비 등	856	859	3	0.1
	○ 채 무 상 환	33,843	28,345	△5,498	△16.2
	○ 여 유 자 금 운 용	1,964	4,143	2,179	110.9

3. 농림부 소관 법률(54건)

☐ 농정제도 일반

-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여성농업인육성법
- 농지법, 초지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식물방역법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진흥법

☐ 농산물 생산·유통

-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 농업 연관산업

- 종자산업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 유관기관 및 회계·기금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한국마사회법,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 동물보호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방조제관리법

☐ 산림분야

- 산림법,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Ⅱ. 농업·농촌 종합대책

1. 대내외 농정여건

□ DDA 출범, FTA 확산 등 개방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

○ WTO/DDA 농업협상, 쌀 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

○ 주요 선진국들은 시장지향적으로 농정개혁 추진(EU: Agenda 2000, 일본: 食과 農 재생플랜, 미국: 신농업법 등)

* 우리의 경우 개방피해 보완, 구조조정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입장

□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 '95년 WTO 출범이후 농림업 GDP는 20조원 수준에서 정체

○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95 : 95% → '03 : 76)

○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로 농외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도 제약

* 농가가구원수 : 한국 2.8명, 일본 3.3, 대만 5.1/ 65세이상 경영주 비율 : 38%

□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 안정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

○ 최근의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대 등에 따라 자연재해, 질병 등 위험이 크게 증가

* 루사('02), 매미('03), 구제역('00, '02), 돼지콜레라('02, '03) 등

○ 자본차입 비중이 높아 농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 30~40대, 화훼·과수·축산농가 부채는 평균보다 1.4~2배 많은 수준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은 시행초기로서 소득안전망 기능이 취약

□ 교육·의료 등 낙후된 농촌생활 여건이 이농을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생활편의시설 유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 초래

○ 자생기반 확보가 어려운 3천명이하 면 급증('90 : 152개 → '00 : 447)

○ 복식수업학급의 96%가 농촌, 의료기관·인력의 88%가 도시에 집중

□ 식품안전, 건강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져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아니고는 시장에서 경쟁 곤란

○ 소비자는 안전성·신선도 등이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 소비 기피

□ 脫도시,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

○ 주 40시간 근무제 등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

* 국내 관광 수요 : ('02) 연인원 4억명 → ('05) 5 → ('11) 6

○ 소득증대에 따라 관광유형도 먹고 즐기는 방식 위주에서,
식문화·향토문화·현장체험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

○ 도시인근의 농촌은 도시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 부각

◇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의 중장기대책과 실천 로드맵을 마련('04.2.23)

○ 119조 투융자 계획을 통해 대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기본계획으로 확정, 국회제출(5.25)

※ 기본법상 식량자급율 설정과 관련, 추가 검토와 국민적 합의형성 절차를 통해 반영

2. 농업 · 농촌종합대책 추진

가. 대책의 기본방향

① 개방체제에 대응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

- 경쟁력이 있는 농가 중심으로 규모화 · 전문화를 촉진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
- DDA 이후 작동이 어려운 쌀 수매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
- 우리 농업 경쟁력의 근간이 될 품질 · 안전성 ·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 · 유통체계를 과감히 개편

② UR대책에서 소홀히 했던 농가 소득문제에 중점을 두고, 직불제 · 재해보험 등 소득 · 경영 안정장치를 대폭 확충

-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직불제 도입
- 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경영안정제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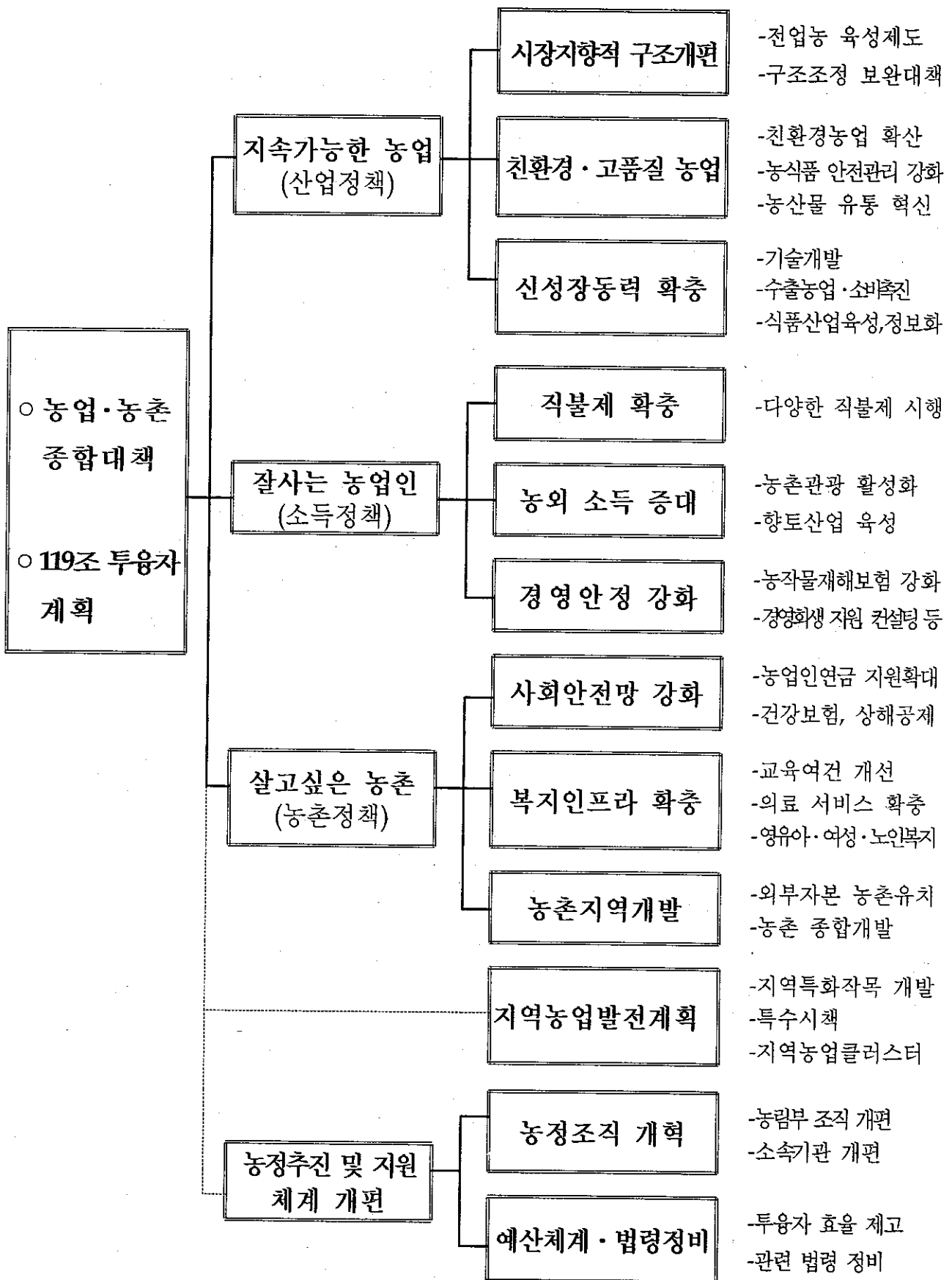
③ 농촌 지역개발 · 복지정책을 확대,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

- 농촌지역의 교육, 의료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연금, 건강보험 등 농촌형 사회 안전망을 확충
- 농촌을 정주 · 휴식 공간으로 바꾸고 농외소득 기반도 확대

④ 정부주도 방식에서 농업인과 협동조합,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농정체계를 전환

- 품목별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사업 세부계획과 품목별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

나. 종합대책 구성체계



다. 119조 투융자 계획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으로
전반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재원별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형태별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투융자 계획은 예산과 기금의 보조·융자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채무상환,
기금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와 회전성 단기 융자금은 제외

□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04년 8.8조원에서 '08년 10.9조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후반기 5년은 연평균 3.6% 증가)

○ DDA 협상, 쌀 협상 등을 감안, 전반기 5년의 투융자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는 확대

○ 투융자 계획은 3년 단위로 평가·조정하여 변화된 상황을 반영

분야별	2004	2008	2013
▪ 농업생산기반	26.5%	15.7	8.8
▪ 농가소득·경영안정	26.2	26.2	30
▪ 농촌복지·지역개발	9.3	14.4	17.2

라. 투융자 집행·평가체계 혁신

< 그간 투융자사업의 문제점 >

- ◇ 농가의 수용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자금 지원후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여 일부 부실사례 발생
- ◇ 농업인 등 고객의 관점에서 객관적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농업인의 자구노력, 지자체의 관심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

□ 투융자의 부실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 방안 수립·시행('04.5.1)

- 신규사업 개발, 사업집행 단계부터 농업인,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추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성, 경영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투융자의 부실화 예방
-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은 조정·통폐합
 - *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장관 현장농정간담회, 품목별 주산지 토론회, 현장애로 대책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농정혁신의 기회로 활용 (주요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 별첨)
- 분야별·계층별 정책고객 40천명을 확보하고 농정정보 및 여론수렴을 실시간으로 실시

Ⅲ. 주요 농정과제 추진상황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가. 직접지불제 확충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와 연계하여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

* 농업예산 대비 직불예산 : 한국('04) 8.4%, 미국('01) 36%, EU 70, 일본 13

□ EU 등을 중심으로 가격지지를 축소하는 대신 소득이전
효과가 높은 직불제를 확대하는 추세

○ 우리의 경우 WTO 출범이후 직불제 논의가 시작, 도입 초기단계
- 경영이양직불('97), 친환경직불('99), 논농업직불('01), 쌀소득보전직불('02) 등

□ 직불제를 체계화·내실화하기 위해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 수립

○ 금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연금방식으로 확대·개편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05), 소득안정계정('07) 등 연차적으로 확대
하여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 수준을 직불을 통해 지지

□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소득보완장치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제로 정착

○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별첨>

주요 직접지불제 현황

☐ 경영이양직불제('97)

- 63~72세 농업인이 진흥지역 안의 논을 매도 또는 장기임대시 지급
 - 63~69세 농업인 매도시 : 연간 2,896천원/ha(최장 8년까지 매월 분할지급)
 - 63~69세 농업인 임대시 : 2,977천원/ha(1회 일시 지급)
 - * 70~72세 농업인의 경우 2,977천원/ha(1회 일시지급)

☐ 친환경농업직불제('99)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농가당 0.1~5ha)
 - 밭 : 유기·전환유기 749천원/ha, 무농약 647, 저농약 524
 - 논 : 기본 532천원/ha, (추가 인센티브) 유기·전환유기 270, 무농약 150

☐ 논농업직불제('01)

- 비료·농약의 적정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0.1~4ha미만, 진흥지역 : 532천원/ha, 비진흥지역 : 432

☐ 쌀소득보전직불제('02)

-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가격하락시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쌀값 차액의 80%를 약정면적에 따라 지급
 - * 농업인 납부금 : 기준가격의 0.5%

☐ 친환경축산직불제('04)

- 축산업등록농가로서 사육밀도 완화등 친환경축산을 이행하는 농가에 지급
 - 지원한도 : 1,300만원/호, 축사 등 주변 조경수 식재시 : 200만원/호 한도 추가

☐ 조건불리지역직불제('04)

- 경사도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마을내 농지·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 밭·과수원 : 40만원/ha, 초지 : 20만원/ha (호당 200만원 한도)

나. 농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

◇ 자연재해 등 경영상 위험요인이 높은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 '01년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과 범위등을 확대

- 현행 과수중심(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에서 채소 등 타작목으로 대상품목 확대 추진

* 금년도 보험가입 농가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25천호(가입률 18.2%)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을 포괄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08)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을 제고

* 농가보험료 지원율 : ('01) 30% → ('04) 50/ 운영비지원('01) 50% → ('04) 90

□ 거대재해 빈발에 대비하여 연내 국가 재보험제 도입

- '03년부터 민간 보험사가 불참함에 따라, 국가 재보험 도입을 위해 예산처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중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농가지원이 현실화되도록 재해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을 지속 추진

- 현재 시·군별 피해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에 미흡

- 직접지원 :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농경지 및 농림축산시설물 복구비

- 간접지원 : 이재민 구호, 생계비 지원, 중고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 복구지원단가 및 보조율 인상, 용자조건 개선, 농림축산시설, 지원규모 제한 철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다. 농가부채 경감 및 경영회생 지원

◇ 개방확대 등으로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기 마련된 부채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 '03년말 현재 호당 농가부채는 2,662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 농가소득은 2,688만원 수준이며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인 단기 부채상환능력은 일부 개선('02 : 95 → '03 : 78)

○ 부채없는 농가 30만호(24%)를 포함, 1천만원 이하의 농가 64만호(50%)

□ 한·칠레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개정 처리된 부채경감 특별법에 따라 농가의 부채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

○ 농가신청이 필요없는 금리인하 조치는 3.5일부터 시행하였고 상환기간 연장등은 7.31일까지 농가별 신청을 받아 시행

* 주요내용 :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 수준 → 1.5) 및 상환기간 연장 (5년거치 15년 상환), 상호금융저리대체·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6.5% → 3), 신규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등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자산 과다 보유, 안정적 직업 보유자 등은 부채대책 지원에서 제외

□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상시 경영회생 프로그램 확충('04 : 2천억원, 3%, 3년거치 7년)

○ 대출기관이 농가와 경영개선 이행약정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 하되 필요시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병행

라. 농외소득원 개발 · 확충

◇ 농촌 고유의 자연경관과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을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의 공간으로 발전

□ 주 40시간 근무제 등 새로운 생활패턴에 부응한 5都 2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관광인프라 확충

-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조성,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활용('04년말 : 76개소)
- 소득과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을 병행
-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시행
 - * 여름 휴가철과 연계하여 전국 농촌 문화체험 공모전 개최 추진

□ 농공단지·특산단지 등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고속도로 주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농공단지 조성 확대
 - 금년중 농공단지 30개소 추가 개발 추진(302억원 : 신규 12개소 등)
 - * 연간 생산액 20조원, 고용인원 113천명(농촌주민 80천명, 농가구원 22)
-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운영자금 지원 추진
 - 지정기준 : 유사업종이 단지면적의 75%이상 → 50%
 - * 일반 농어촌지역 평당 지원단가(일반/전문) : 보조 20천원/40, 융자 10천원/10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산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기회 확충

- 지역전통 및 특산품을 활용,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 유도
- 전통주류 홍보·판매 지원 및 조세경감 방안 추진
 - * 전통주 품평회 등을 포함, 「우리 술 페스티벌」 개최 (8월)

2. 친환경 · 고품질 농업 육성

가. 친환경 농업 확산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업의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투입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

* '03년말 2%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금년부터 화학비료 · 농약 사용량*을 매년 5%씩 감축하여 2013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절감

○ '05.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 비료 및 녹비작물 지원은 지속 확대

○ 시설원에 작물을 대상으로 천적방제 지원사업 추진('05부터 연 평균 2천ha)

* 화학비료('99~'03 평균) 375kg/ha, 합성농약 12.4kg/ha

□ 다수 농가의 친환경 농업 참여 유도를 위해 친환경직불제 지원대상을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농가로 확대 추진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전문판매장 확대, 인증마크 TV 광고 등 유통활성화 지원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

○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을 확대하여 밭 수질 · 토양 오염 개선

* 농림부 · 환경부 합동 「축산분뇨 관리 · 이용기획단」 구성 · 운영중

○ 친환경 축산직불제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료포 확보 (한육우 · 젖소), 분뇨 감축 및 환원(돼지 · 닭) 등을 의무화

나.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

□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와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

○ 우수농산물관리제(GAP),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이력추적제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 사전예방적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품목·주산지별 선도 농가 중심으로 안전성 교육을 확대

- 선도농가 중심의 안전성 전문 교육과정 신설 : 2회 80명('04.9)

○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감축

- (현행) 항생제, 합성 합균제 등 53종 → (감축) 30종 이하

□ 안전성·원산지 단속을 과학화·체계화하고 다양한 제제수단 강구

○ 도단위 농관원 분석실(9개)과 별도로 주요 시·군에 정밀 분석실 설치 추진('04 : 양평, 순천, 진주)

○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 원산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안전기준 위반시 법적제재뿐 아니라 타 지원과 연계, 집중 관리

□ 소비자에 의한 시장 모니터링 등 소비자 참여 확대

○ 명예감시원을 대폭 증원('03 : 3,600명 → '05 : 5,000)하고 안전성 조사에 소비자 참여기회를 확대

* '03년부터 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안전자문단」 설치·운영중

다. 농산물 유통혁신

- ◇ 농산물유통이 대형유통업체 등 신유통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대응능력 제고 및 물류개선 등 효율성 향상 추진
- * 도매시장 유통비중 : ('98) 48.2% → ('03) 44.6, 전자상거래 : ('00) 500억원 → ('03) 6,119

- 산지 농협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능력을 높여 신유통에 적극 대응
- 군단위로 규모화되고 공동브랜드·품질·안전성 관리가 가능한 공동마케팅 조직을 집중 육성('04 : 전국 20개소 시범선정 추진)
 - * 공동사업법인 법제화, 출자제한 해제 등 제도개선(농협법 개정)
 - 기존 산지유통 조직은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퇴출방식으로 경영혁신 유도
 - 유통인재 양성을 위해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신설(연간 450명)
-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체계 개편 유도
- 고품질·친환경·공동선별 상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 거래체계 개선방안 수립 추진
 -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소비자보호 표준협약 개발
- 농산물 파렛트 출하촉진 등으로 농산물 물류 비용 절감
- 도매시장의 파렛트 출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 * 강서·광주서부 도매시장을 파렛트 출하 시범시장으로 육성
 -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공동선별 비용의 40~50% 지원

라. 농식품 수출확대

◇ 금년 20억불 수출을 목표로 생산-선적전 물류-해외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농가·업체·정부 등이 공동대응

* 수출동향('02~'03) : 김치 79백만불 → 93, 채소 89 → 101, 인삼 55 → 67 등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효율적 물류기반을 뒷받침
 - 수출 전문생산단지(108개)를 평가하여 우수단지 중심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수출 농산물 공급기지를 육성
 - 금년도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개장(5월 광양·10월 마산)을 계기로 집하·선별·검역·통관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의 규모화·대형화 유도
 - 금년부터 수출농산물 공동대표 브랜드제 시행
 - * 휘모리(Whimori): 파프리카, 배, 국화에 대해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
 - 수출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 수출업체에 원료구매 자금 등 인센티브 부여('04 : 용자 3,689억원)
 - 수출 물류비 지원을 10만불 이상 수출업체에 집중
- 정부의 지원은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수요 지변확대에 역점
 - 농산물유통공사를 수출중심 조직으로 개편('04.4)하고 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개발지원 프로젝트 추진
 - 수출입조합, 품목별단체, 유통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FTA 등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수출전략 수립
 - 현지관측행사, 식문화 홍보, TV 광고 등 소비자대상 직접 마케팅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향상

마. 농업경영체 육성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기존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능 강화

* 40세미만/60세이상 : ('70) 35.2%/15.2 → ('90) 14.6/31.3 → ('02) 4.1/56.8

* 2010년까지 6ha 규모의 쌀 전업농 7만호가 쌀 생산의 50% 담당

□ 향후 농업생산을 주도할 후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 35세 미만의 창업농 1천명을 선정, 800억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융자('04)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영농 희망 대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품목별 장·단기 직업훈련,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농업인턴제 등

○ 창업농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업농 후견인제 등 선정 후 정착지원제도 도입 추진('05)

□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

○ 교육기관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현장실습과 경영교육 강화('04년 : 62개 과정 45천명)

○ 농업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규모화 된 농가의 경영혁신 유도

□ 신지식·벤처농 육성으로 혁신주도형 농업성장 기반을 강화

○ '99부터 총 173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정, 지역농업 리더로 육성

○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서울 1, 경기 2)를 영·호남 등 권역별로 확대 지정하는 등 농업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별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6.25 경제장관 간담회)

◇ 전업농과 농업법인의 규모화·전문화를 뒷받침하고 외부자본과 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지원제도 정비 추진

□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세부담 완화

- 농업소득세 과세를 향후 5년간 중단하고, 현재 소득세보다 높은 농업소득세 누진구조 개편 추진(지방세법 개정)
-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현행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외부 자본과 전문 인력의 농업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시 농업인 지분을 현행 1/2에서 1/4로 완화
- 농업인 위주의 농업법인 대표이사, 집행이사 제한 규정을 삭제
- 지자체가 운영중인 농업관련 공기업을 농업 회사법인으로 인정

□ 창업지원, 컨설팅 등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

- 농업벤처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
-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림부가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공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 검토('05년말)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체계와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재정부·행자부 등 소관 부처별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세부 추진방안 수립·시행

3.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가.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삶의질향상특별법을 계기로 범정부적 농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금·건강보험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

* 65세이상 인구비율('02) : 도시 6.1%, 농촌 14.5%

□ 지금까지는 농업(농산물) 위주의 정책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지역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

○ 농촌복지의 획기적 개선대책이 없이는 농업의 지속발전,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

* 농특세('94~'03) : 농어업 경쟁력 강화 64%,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 36

□ 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6.6)에 따라 농촌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을 구축

○ 15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관련정책을 총괄·조정

○ 10년간 연장된 농특세(약 20조원)를 삶의 질 향상 대책에 집중 지원

□ 금년부터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민간 전문기관에서 9월말까지 농산어촌 지역의 복지여건,
교통·통신기반, 기초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내용과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이행계획 수립

□ 인구의 노령화, 의료 접근성 취약 등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경감을 지속 확대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상향 조정('04: 502억원)

- ('03) 월 표준소득 22만원 보험료의 1/2 → ('04.7) 월 표준소득 44만원

* 1인당 연간 지원액 : ('03) 86천원 → ('04) 152

○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2% 경감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추가 경감예산을 별도 반영 (올해 8%추가경감, 537억원)

- 경감비율 : ('03) 22% → ('04) 30 → ('05) 40 → ('06) 50

□ 농작업 안전공제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 사망 또는 상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해공제료 지원수준도 확대 추진

* 농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1.6배 수준이며 계속 증가 추세('01 노동부)

○ 기초 생활보장대상 선정시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 농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 확대

○ 고교생 학자금 보조(1.5ha 미만)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30천명)

○ 금년 2학기부터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자녀에 대해 학자금(국립대 전액, 사립대 162만원 한도)을 직접 보조

○ 1.5ha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 양육비 신규지원(월평균 102천원)

나. 농촌 지역개발 본격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농촌마을 개발·정비 추진

□ 소도읍의 배후 농촌지역은 동일 생활권에 있는 3~5개 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생활환경 정비 및 경관형성 지원**

○ 권역별 3년간 70억원 수준을 보조('04 : 160억원, 국고 80%, 지방비 20) 하고 '13년까지 1천개 권역을 목표로 추진

* 올해 16개 권역 시범 착수, '05년 대비 20개 권역 계획 수립

○ 주민참여형 **사업예정지 공모** 방식으로 상향식 개발을 유도

□ 권역별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문학·생태·환경·언론 등 각계 원로들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컨소시엄 방식 및 민간기관 위탁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개선

○ 인프라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불량시설 철거 등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사업**과 병행

○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고 국민의 **노후·여가활동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 영농체험 희망자, 은퇴자 등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

다. 도·농 교류 활성화

◇ 환경과 건강 등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을 도·농 상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농 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 수립('04.1)

□ 사람과 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세제 등 개선

- 금년부터 농촌주택 추가 구입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
- 도시주민이 농촌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추진

□ 도·농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

- 농업기반공사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 개편(4.1)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을리더, 주민, 공무원, 도시민 대상 교육실시('04: 1,000명)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추진

- 농협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등이 참여한 1社 1村운동 발대식 지원(6.8)
 - *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종교·사회단체로 확산되도록 성공사례 지속 홍보
- 시장·군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투어 심포지움 개최(8월)를 통해 지자체, 도시민 등의 도·농 교류에 대한 관심 제고
-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시민상」 제정 추진 등 도시민 관심 유도 및 도·농 상생의 공감대 확산

라. 농촌지역 정보격차 완화

◇ 농가 PC 보급율(전국 평균의 1/2), 인터넷 이용율(1/7수준) 등 정보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접근 및 활용수준 향상

-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혜택을 도시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정보인프라를 확충
 - 원거리·주거 저밀도지역(50가구 이상, 전화국간거리 5~10Km)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04 : 정보화촉진기금 700억원)
 - * 읍·면지역 인터넷 이용 가능 가구 : ('03) 93% → ('04) 95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중고 PC의 성능을 향상시켜 농가에 보급('04 : 15백대)
 - 마을 공동정보이용시설인 디지털사랑방 설치(20개소)
-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수준별 정보화 교육 강화
 - 농업정보 119대학을 통한 농가방문교육 및 농협, 농업기술 센터를 중심으로 집합교육 실시('04 : 74천명)
 - 지역정보화를 이끄는 읍·면단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육성('04 : 169명)
- 농산물 유통정보·기술정보·생활정보 등 돈 되는 콘텐츠 확충
 - 출하지원 정보서비스 대상품목 확대 : ('03) 44개 → ('04) 67
 -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net)을 중심으로 품목별 종합정보 제공
 - 홈페이지 구축지원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 타 농가에 노하우 등 전파

IV. 당면 농정현안

1. 영농 추진상황

- 본격 영농시작기인 4월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이 있었으나
큰 피해 없이 농작물 생육 및 영농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은 130%, 일조시간은 92% 수준
 - 6.19~21사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35천ha)는 중앙재난대책본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를 완료(7.3)하고 농약대 등 지원예정
 - 7.3~4사이 제7호 태풍 「민들레」로 인한 침수피해(574ha)가
있었으나 1일이내 퇴수완료, 피해 시·군에서 정밀 조사중
- 보리·마늘·양파 수확 및 벼·고추·과실 등의 생육은 비교적 양호
 - 벼 : 이삭거름 주는 단계로서 질소시비 감축을 중점 추진 중
 - 보리 : 작황은 평년작 상회, 수매중(5.31~7.31, 200천톤 계획)
 - 채소 : 마늘·양파 수확완료, 풋고추 출하중(붉은고추는 7월하순 수확직수)
 - 과수 : 복숭아(7.상순), 포도(8.상순), 사과·배(8.하순) 순으로 수확 시작
-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5.20~
10.15)하고, 작물생육기 병해충 관리를 강화
 - 기상특보 상황전파 및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요령 집중 홍보
 - 품질과 수량에 영향이 큰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도

2.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

가. 특징 및 여건

□ 쌀 협상은 UR협상에서 인정받은 10년 관세화 유예조치의 연장을 위한 협상으로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 주 협상 내용

○ '05년 이후의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04년중 협상하되, 연장시 관계국이 수락 가능한 추가적 양보 필요(UR 협정문)

* MMA 수입물량 ; ('95년) 51천톤(국내 소비량의 1%) → ('04) 205천톤(4%)

□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의 실리를 추구할 방침

○ 관세화 유예 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물량(TRQ)만 도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대가로 TRQ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 직면 가능성

○ 관세화 시에는 과도한 TRQ 증량을 피할 수 있는 반면,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쌀값의 등락, 향후 관세감축 등에 따른 수입량 급증 가능성

□ DDA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지연으로 쌀 협상의 객관적 이해득실 판단기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

○ 7월말까지 모델리티의 기본골격(framework)이 마련되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협상이 연말까지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나. 그간의 협상 추진현황

□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개시의사 통보(1.20)

- 관계 부처 합동으로 쌀 협상대책 실무추진단(단장: 농림부 차관) 구성(3.16)
-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9개국이 협상참가 신청(4.21까지)

□ 외교부(대표)·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

* 협상의 투명성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농업계 추천 민간전문가(WTO 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와 동행

- 미국(5.6), 중국(5.12), 태국(5.14), 호주(5.18)는 각국 수도를 방문, 파키스탄(6.1), 인도·이집트(6.2), 캐나다·아르헨티나(6.3)와는 WTO 농업위원회 일정을 활용하여 제네바에서 1차 협상 개최

< 주요국 반응 (1차 협상 결과) >

- i) 미국은 유예기간과 TRQ증량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면서 자국 쌀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에 관심표명
- ii) 중국은 쌀 협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입찰절차 등 양자문제 해결도 기대하는 분위기
- iii) 태국은 농업협정상 관세화가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시장 접근의 실질적 개선에 관심 표명
- iv) 호주는 장기적·안정적인 한국 쌀 시장 진출을 희망

□ 중국과 6.18 북경에서, 미국은 6.23 제네바에서 2차 협상 수행

- 관세화 유예연장기간, TRQ 증량수준 및 수입쌀의 용도제한 등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을 위한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

다. 지금까지의 협상평가 및 향후계획

- 협상 초기단계로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하게 전달되었고,
각국의 입장과 관심사항이 상당수준 가시화
 - 예외없는 관세화원칙 강조, 유예연장 조건에 자국 관심사항 반영
요구 등 국가별로 입장차이가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 예상
- 상대국들은 대체적으로 현행 TRQ 쌀 수입 및 유통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소비자 시판과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
 - 또한, 유예기간, TRQ 증량 및 관리, 국영무역 등 쟁점에
대한 협상결과가 DDA 일반원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계
- 주요국과의 협상결과를 중심으로 쟁점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대응
 - 중국, 미국은 DDA협상일정을 감안, 7월 중순이후 3차 협상개최
 - 태국은 7.8 방콕에서 2차협상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조건논의
 - 나머지 6개국은 상기 3개국과 협상 이후 2차협상 계획
- 사안의 특성과 협상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계획을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상대국 반응, DDA협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쌀 산업 국내 보완대책 추진

-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및 DDA협상 이후 국내 쌀 산업은 쌀 수입 증가와 쌀값 하락, 국내 보조금(AMS) 감축 등 새로운 도전 예상
- 쌀산업의 기반유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추곡 수매제도 개편 등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이 긴요
- 정부는 지난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04.2)
- 6월초부터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역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중

< 쌀산업 종합대책 주요내용 >

①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 육성

-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유동화된 농지는 2~5ha 규모의 전업농에 집중 지원
 - (기존) 2,890천원/ha, 1회지급 → (현행) 월 241천원/ha, 최장 8년간
 - * 지원규모 : ('03) 43억원 1,532ha → ('04) 141억원, 5,552ha
- 영농규모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전업농의 부담완화를 위한 이자율(현행 3%) 등 지원조건 개선 추진
 - 영농규모화 사업 ('04 : 3,055억원, '10년까지 4조 2천억원)
- 전업농·학계와 함께 전업농 선정·관리 강화, 농기계 지원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쌀전업농 육성방안을 강구

②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등 쌀관련 직불제를 전면 재검토·보완**

- 논농업직불제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04년: 4,810억원)
- 쌀 소득보전직불제 : 쌀값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04년: 955억원)
- 친환경농업직불제 :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업 실천 중심으로 확대 추진('04년: 55억원)

③ 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쌀값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를 WTO에서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 추진

- 추곡수매제는 WTO 보조금 감축(연간 750억원)에 따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소득지지·수급조절 기능이 위축

* 추곡수매량(비중) : ('94) 1,050만석(30%) → ('03) 521(17%)

-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을 확충할 경우에는, WTO 수매 보조금(AMS)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

- 공공비축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현재 검토중인 기본 골격은 600만석 수준을 비축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일정물량을 시가(時價)로 매입·방출

⇒ 지역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쌀농가 소득 안정방안」 및 「수매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쌀 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

④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

- RPC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금년부터 최하위 등급 RPC (5%)에 대해 정부 시설·운영자금 지원 중단
- 경영부실 RPC를 중심으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금 지원시 우대
- RPC 경영과 조합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⑤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

- RPC 등을 중심으로 품종선택, 토양·생육관리, 수확후 관리·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금년부터 정부 수매 물량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종별 수매·보관·방출 추진
 - * 시·군별로 3개 내외 품종을 중심으로 수매함으로써 품종통일 유도
- 품종, 도정일자 등 포장양곡 표시 이행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처벌 강화 추진

◇ 2004년 추곡수매가는 쌀협상 및 DDA협상 입지를 강화하고, 개방폭 확대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공급 과잉 기조인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4% 인하키로 정부안 확정

-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완대책은 쌀 협상 등을 감안한 소득안정대책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정부(안)을 중심으로 약정체결·선금지급(5.20~6.26) : 5,630억원

4. DDA · FTA 협상 대응

가. DDA 농업 협상

- 2000년에 시작된 WTO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01.11)**에서 합의된 기본원칙과 일정에 따라 세부원칙(Modality)협상 진행 중
 - 당초 지난해 3월 세부원칙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재차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없이 종료
 - 금년 2월, 협상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7월까지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수립을 목표로 추진
- 시장접근(관세감축) · 국내보조 · 수출경쟁의 세 분야를 주축으로 주요 쟁점별 의견접근을 모색 중
 - 시장접근은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민감품목에 대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 ⇒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최소화 및 TRQ(관세할당 물량) 증량 부담 완화에 최우선 대응
 - 국내보조는 무역왜곡의 정도에 따라 감축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 ⇒ 쌀 관련 직불제 확충 등을 감안, 신축성 확보에 협상력 집중
 - 수출경쟁은 모든 수출지원 조치의 철폐라는 목표 하에 추진
-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G-10그룹(수입국 그룹), NTC(Non-Trade Concerns)그룹, SP(Special Products)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사안별 공조체계 강화**
 - G-10각료회의(7.5)에 참석하여 수입국 입장반영 필요성을 설득

나. FTA 협상

- 다수국가와 FTA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부 기본계획 하에 현재 일본, 싱가포르와 공식협상을 진행 중

한·일 FTA : '05년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4차례 협상을 개최

- 농업·서비스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
 - * 4차 협상(6.23~25)에서는 협정문 및 상품양허 일반구상에 대해 논의
- 농산물 수출확대 계기로 삼아, 품목단체·수출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향적으로 대응

한·싱 FTA :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3차례 협상 개최, 협정문, 상품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 협상 중

- 농업기반이 미약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주변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 ASEAN과는 전문가그룹 공동연구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금년 안에 연구결과 및 국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FTA 협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국가경제 전체에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부는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5. 농업협동조합 개혁

- 그간 농협은 농업근대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했으나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한계 노출
 - 경제사업은 대형화·전문화하는 新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처 미흡('03년 중앙회 경제사업 : △1,837억원, 읍·면단위 지역조합이 전체의 53%)
 - 중앙회 신용사업은 정부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이 취약하고 일선조합은 고금리·경영비효율 등으로 농업인의 불만 야기
 - * 총예수금의 36%, 총대출의 31%를 정부·지자체에 의존
 - 직선 상임회장과 지역조합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전문성 저하
- ⇒ DDA·FTA 등 시장개방의 진전과 금융·유통여건 변화에 적응,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전문화·규모화가 긴요
 - * 유럽·미국 등의 협동조합은 이미 '80년대부터 조합간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향형 마케팅 조직으로 급속히 국제화·대형화하는 추세
-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 지역조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협동조합 개혁을 준비
 - 농협·농민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1년여 논의를 거쳐 농협법 개정사항을 정부에 건의('03.9)
 -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이견사항을 조정하여 정부안을 확정, 국회 제출 계획

<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중앙회 :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 집행부에 대한 평가·감독권을 유지
- ②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
- ③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하고 회계·유통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
- ④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

□ 일선조합 : 규모화·전문화 촉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 ①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처벌강화
- ② 시·군 범위 내에서 1구역 1조합원칙을 폐지하여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
- ③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
- ④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농협·농민단체와 협의하여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

중 앙 회

- ① 농산물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앙회가 각종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평가시도 우대
 - * 대형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선조합과 직거래 중개 확대
- ② 신용-경제사업간 순환보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전문성을 제고
- ③ 중앙회 본부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인력 슬림화 지속 추진
 - *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중앙회 읍·면 소재 신용 점포는 단계적으로 정리

일선조합

- ① 품목조합 중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추진
- ② 농산물 상품화시설(APC·RPC)을 확충·내실화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역점
 - * 공동계산 확대 목표 : ('03) 5% → ('13) 30%
- ③ 금년말까지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 조합이 스스로 합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 ④ 기타, 상호금융 금리인하 및 임직원 급여체계 개편 등을 추진

6. 농지제도 개선

- 지난 1월부터 농지제도 개선시안을 바탕으로 학계·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및 주요쟁점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 제시
- 쟁점별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계부처 의견 조회중

<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
 -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
 - * 현재 '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 허용
 -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1ha 미만 소유 제한은 유지하되,
 -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발전특구 안에서의 농지소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농업인출자 지분제한을 완화(1/2이상 → 1/4이상)하고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
- ※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 규모는 현행 300평 수준을 유지

②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

○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적정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농업진흥지역은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중심으로 재조정

- 농업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보전

③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현행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영농규모화 재원 등으로 활용

④ 농지가격 하락, 농지매도 및 임대 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도입

○ 농지유통화정보 제공, 농지의 매입·보유, 농지의 수탁(임대·
매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뒷받침

□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 **투기·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책 수립

7. 한·칠레 FTA 후속대책

□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지원시스템 가동

- 농업인·관계부처 등으로 FTA이행지원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장관) 및 지원실무위원회를 개최, 세부 지원방침 확정
-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리체계를 구축, 수입상황 점검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 적용, 칠레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G) 및 관세할당물량 관리규정 마련

□ FTA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수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시행

-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자율사업 방식으로 추진('04 : 1,607억원)
 -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 심사·확정할 예정

□ 한·칠레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직접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및 폐업 지원

- 칠레산 수입급증으로 국내가격 하락시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시행(시설포도, 키위)
 -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가격차의 80% 보전
- 시설포도·키위·복숭아 폐업 희망농가에 폐업지원금 지급
 - 폐원(3년간 순수입액), 전업농에 과원 매도시(1년간 순수입액)

8. 가축방역 종합대책

- 최근 인적·물적교류 증대로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방역의식과 방역체계**는 여전히 미흡
 - 2000년 이후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으로 7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 발생
 - 광우병 등 신종 인수공통 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상존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01, '02)을 통해 소독의무 확대 등 방역제도를 개선하였고 현재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가축방역 종합대책 골자>

- i) 인수공통 전염병의 사람감염 방지를 위한 **부처간 대응체계** 구축
- ii) 가축 **사육환경** 개선, 국경검역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
- iii) 농가 방역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조직과 인력**을 확충
 - 시·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인력 증원, 수의과대학 졸업자를 공익수의관으로 군 대체복무 추진
- iv)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
 - 방역활동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추진
- 방역 공조체제 구축 등 **제도개선** 부분은 대체적으로 부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방역조직과 인력증원에는 관련부처가 소극적 입장
 - 정부내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가금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

<별첨>

주요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 식량생산 -

건의 및 애로사항	추진상황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 농협 수수료 부과 철회 * '03 감면세액 : 11천억원 * 수수료율 : 2%(연간 252억원)	○취급수수료는 면세수혜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가능('02.1) ○이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농협측에서는 수수료 징수를 더 이상 유예하기 어렵다는 입장
② 보리 수매 물량 확대 (전남, 전북 등)	○보리는 매년 농협이 파종기전에 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물량범위내에서 수매 - 보리 수매약정량 : 200천톤('03 대비 △ 5%) · 일반보리(겉보리, 쌀보리) : 110천톤 · 맥주보리 : 90천톤 ○수요 감소, 재고 증가 등으로 약정량 축소 - 보리연간 수요 : 112천톤(식용 60, 주정용 52) - 재고(일반보리) : '03말 214천톤 ○올해 보리생산량은 249천톤('03: 220천톤) ○현 보리재고, 연간수요, 현재의 약정물량 수매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수매는 어려움
③ 중국산 찰쌀 수입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98부터 50%조정관세 부과 * 찰쌀 수입량 : ('97) 6,693톤, ('00) 6,525, ('03) 8,198	○찰쌀은 UR이전('77년)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으로 인위적인 수입제한은 어려움 ○국산둔갑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체계 유지 - 공정거래위원회 :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에 대한 조사·시정 - 관세청 : 찰쌀 통관기준 강화, 저가 수입신고 방지대책 마련 - 농산물 품질관리원 : 원산지 특별단속 강화 등

- 원 예 -

건의 및 예로사항	추진 상황
① '91~'99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유리온실이 노후화 되어 보수에 필요한 온실 개보수 자금 보조 (경남진주, 전남 화순, 경기화성 등)	○'91~'99년까지 유리온실 건축시 시설비의 50%(국고 25%, 지방비 25%) 수준 보조(338ha) ○개별농가의 생산시설은 농업종합자금에 의한 저리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시행중
② 감귤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적지 감귤폐원 작업비 추가 지원(제주도) * 지원면적 : ('04계획) 1,000ha * 추가요구 : 1,500ha	○'97~'04년도까지 당초 부적지감귤 폐원 사업 계획량 1,810ha에 대한 지원 완료(543억원)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감안, 지속지원에는 어려움 ○작업비 지원문제는 과수산업 대책에 포함하여 검토 예정
③ FTA대책 폐업지원 품목에 사과, 배, 감귤, 노지포도, 단감 등 포함	○FTA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한하여 폐업희망 농가 지원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한·칠레 FTA 협정시 사과·배는 제외, 감귤은 DDA 이후 논의, 노지포도·단감 등은 수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폐업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④ 국립포도연구소 설치 요망 (포도회, 옥천포도농가 등)	○농진청 원예연구소 산하 포도시험장 설치를 행자부에 요청(5.21) ○이와 별도로 주산지 대학에 「포도연구센터」를 설립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

건의 및 애로사항	추진상황
⑤ 산지유통센터(APC) 설치·확장시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을 완화(충남당진 등)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도시지역내 녹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 : 70~90% 이하 * 다만, APC 등 농업관련시설은 도시지역 밖의 경우 60%이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완화 가능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법령 개정 검토를 협의요청 중
⑥ 산지유통전문조직등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출하사업 지원 확대(경남 합천 등)	○산지출하개선을 위하여 공동선별 등 지원확대 - 포장·선별예산 : ('04) 516억원 → ('05요구) 522 - 수요가 늘고 있는 공동선별지원예산 확대 · ('04) 70억원 → ('05요구) 120 ○APC 등 산지유통전문조직 적극 육성 - APC 시설지원 : ('04) 185억원 → ('05요구) 296
⑦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육성을 위한 주세감면 및 홍보지원(민속주 협회 등) * 소규모 민속주, 농민주 생산자에게는 차등과세로 세부담 완화	○소규모 생산 민속주 업체에 주세차등화 적용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추진중 - 협의안 : 연간 생산량 60kl 이하는 최저 주세율 5%적용(현행 30~72%) ○전통주 홍보를 위한 「우리술 페스티벌」 ('04.8월 예정) 개최, 전통식품 Best 5 선발,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판촉 지원

- 축산 -

건의 및 애로사항	추진 상황
① 축산업등록제 관련, 시행 시기를 '10년까지 연기 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업등록은 추가적인 시설·장비 없이도 가능하고 '05년말까지 이미 유예기간을 허용 -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무허가 축사도 등록할 수 있도록 기 조치 ○기존 적법축사 보유농가, 무허가 주택 등 축사 이외의 무허가 건축물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인정하기 어려움
② 양봉농가 아카시아꿀 흉작 관련,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정부지원(양봉협회)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아카시아 꿀 채집량 감소 피해를 농업재해로 보기 어려워 별도 지원방안 강구 - 양봉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환대출 추진 등
③ 낙농진흥회소속 농가의 기준 원유량을 일반 유업체 수준으로 증량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	○현재도 원유잉여량이 350톤/일 수준 발생하고 있어 기준원유량 증량은 어려움 - 기준원유량 증량시, 재정 추가투입 및 원유 수급 불균형 심화 예상 ○기준원유량 조정은 원유 집유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일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④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반영 하여 원유가격 인상 (낙농육우협회 등)	○현재 원유값은 낙농진흥회 및 일반유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소비확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낙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 원유가격 인상시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감소 → 잉여원유 증가 등 문제발생 가능성

건의 및 예로사항	추진상황
⑤ 한우 생산이력제 전면 시행 (‘04.4.29, 경기도 안성, 한우산업발전 현시간담회)	○광우병 발생 대비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농가의 자율신고 의식이 낮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 단계에서 전면 실시는 무리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금년 10월부터 우수한우브랜드 중심으로 시범 실시 * 법령 등 제도적 장치는 사전에 완비(‘08년까지)
⑥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04.4.29, 경기도 안성 한우산업발전 현시간담회, 5.12 충남홍성 양돈분야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에 합의(‘04.2월) - 쇠고기에 대해 우선실시하고 추후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와 협조, 금년 정기국회에서 식품 위생법 개정 추진 - 이인기의원 등 10명, 개정안 제출(6.1)
⑦ 부루세라병 예방접종 허용 (정읍지역 현장방문시) * 정읍지역의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백신접종 실증시험 승인요구	○예방접종 문제는 한우협회, 관련 전문가 등 이견이 있어 해당지역의 감염실태를 조사후 검토기로 결정 - 정읍지역 감염율조사 : 11천두중 7두 양성(0.06%)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7.9일), 정읍시 실증 시험 방안을 협의할 예정 - 정읍시 주관으로 ‘04년부터 3년간예방접종 실증사업(사업비50백만원) - 참여농가 및 두수 : 5농가 250두

V. '04 정부입법 추진계획

1. 입법추진 기본방향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의 차질 없는 정비
- 농지, 협동조합 등 농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뒷받침
- 금년도 정부입법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농림분야 행정규제정비 및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병행 추진

2. '04년도 정부입법 추진(총 18건)

○ 제 정(4건)

- 식품산업육성법(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대체 입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진흥에 관한 법률

○ 개 정(14건)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작물 재해보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양곡관리법, 초지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 16대 국회 입법 실적 : 60건(제정 13, 개정 46, 폐지 1)

3. 제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정 : 4건>

○ 식품산업육성법

- 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 육성 심의회 설치
- 전통식품 현대화,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통계, 식품정보센터, R&D 및 경영지원 등)
-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우수식품의 공급체계 형성, 식품영양, 식생활 지침 등 소비자 정보제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의 공익적 · 환경적 기능 강화, 재해에 강한 산림육성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 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하며 다양한 공익기능 수요에 부응하는 국유림경영 및 국유림확대 · 집단화의 법적근거 마련
- 국유림경영 · 관리기본계획수립, 지속 가능한 임산물 수급대책 마련, 국유임산물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등의 절차 마련

○ 산림문화 · 휴양진흥에 관한 법률

-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수요에 대비,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산림문화 · 휴양진흥 기본계획 수립, 숲 해설가 자격제도 도입

<개정 : 14건>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농어업특위의 존속기간을 현행 '04년말에서 '07년말로 3년 연장
- 위원회 기능에 농어업·농어촌대책 실천상황 점검기능 추가 등

○ 농지법

-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제도 개선
-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진흥구역내 허용행위 확대 등

○ 농작물재해보험법

-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농업협동조합법

-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교육지원사업 전담 전무이사제 신설
- 지역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의무화
- 법 시행 후 1년 내에 중앙회가 신·경분리 세부계획을 정부에 제출

○ 농산물품질관리법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의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촉진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등 농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 법령과 공사명칭 변경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위주에서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농지은행 사업으로 기능 확대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임산물 품질인증 신청수수료 납부 규정 신설
- 임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인증제품 생산자에 대한 자금지원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취소, 승인취소시 원상회복명령 등 수목원 조성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편입토지 보상규정 마련으로 민원해소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장·중앙회장의 출마요건 완화 및 연임제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
- 사외이사 확대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 양곡관리법

-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제 도입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국무회의·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수매량 및 수매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양곡의 표시제도 강화

○ 초지법

- 초지전용 범위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로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부실 초지관리 방안 개선

○ 수의사법

- 외국 유학생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내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조정
- 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여 선언적인 동물보호규정 보완
- 반려동물판매업 신고제 및 일정연령미만 동물 거래제한 등으로 소비자 보호, 인식표 부착 의무화로 유기동물 발생 방지

○ 농어촌정비법

- 이상홍수로 인한 저수지 등의 붕괴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근거 및 사업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펜션” 등 신종 숙박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참고>

정부 입법추진 현황

2004. 7월 현재

법 른 명	제출계획(실적)		추진상황
	법제처	국회	
식품산업육성법(제)	8월중	9월중	입안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8	1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	9	"
산림문화·휴양진흥에 관한 법률(제)	7	9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	9	입안중
농작물재해보험법	8	8	부처협의 완료
농지법	7	9	"
농업협동조합법	-	7	국회 제출
농산물품질관리법	9	10	입안중
양곡관리법	9	10	부처협의 완료
초지법	8	9	입안중
수의사법	7	8	입법예고중
동물보호법	9	10	입안중
농어촌정비법	9	10	부처협의 완료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0	11	입안중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4	6	국회 제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6	"
산림조합법	8	10	부처 협의중